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하여 단순히 철회논의의 제의는 정당한 철회의 요구가 아니나, 이러한 보도로 야기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O'hara V. Storer Communications Inc.

19 Med. L. Rptr. 1225(캘리포니아 주항소법원, 1991)

## 사건개요

1983. 10.12 Storer 통신사가 경영하는 채널 39 방송국은 O'Hara 라는 여인이 창녀라는 뉴스 보도를 방송한 바 있었는데, 사실은 O'Hara 가 창녀가 아니라, 창녀조직에 경찰이 개입되어 있는지에 관한 기소배심 심리의 증인이었다. 채널 39 방송국의 기자는 기소배심의 심리에 관한 신문에 난 기사를 읽은 후 창녀라고 주장된 여인과 O'Hara 를 바꿔 기사화함으로써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당시 O'Hara 는 44 세의 광고관계의 자유사업가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하면서 판촉활동 등을 통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1983.11.2. O'Hara 의 변호인이 채널 39 방송국에 서신을 보내 기사의 철회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접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서신의 한 부분은 「본인은 철회기사가 방송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본인과 이 문제를 먼저 상의를 한 후에 행해질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같은 달 3. 방송국측의 변호인이 O'Hara 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동인의 검토를 위해, 방송된 관련 기사의 사본을 발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다음날 사본이 특급으로 발송되었다. 그 다음 같은 달 15. O'Hara 의 변호인이 전화를 걸어오자, 방송국측 변호인은 O'Hara 의 변호인이 적당한 철회안(a proposed retraction)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동인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다음달 7. 방송국측 변호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으나, O'Hara 의 변호인이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만 말하였다. 그 후 방송국측 변호인은 1984.8.13. O'Hara 의 변호인이 250 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기까지 O'Hara 또는 동녀의 변호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1984. 10. 24. O'Hara 는 명예훼손, 감정적 고통의 고의적 가해(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과실 및 사생활 침해 등의 4 가지 청구원인으로 캘리포니아 주 산디에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1988. 7. 7 위 법원은 O'Hara 가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 48 조 a 항에 따라 정정(Correction)의 정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Storer 가 정정을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Storer 에게 승소의 약식재판을 하였다. 정식재판이 1989. 10.에 개시되었는데, 일련의 증거제출전 이의절차(motions in limine)에서 위 법원은 O'Hara 가 철회법령(a retraction statute)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위 약식재판으로 인해, 동녀는 통상 손해(general damages)에 관한 증거와 평판(reputation)의 손실, 감정의 손상 및 정신적 고통 등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나, 배심원들이 정신적 고통의 산정 목적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의 특별한 평결상의 지시(instruction)에 따라 동녀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에 관한 정신의학적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위 법원은 특별손해(special damages)에 한정하여 소송진행을 제한하였는데, 배심원은 원고에게 300,000 달러의 승소평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특별손해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감정적 손해에 관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됨으로써 판결이 과도하고 감정적이며 편견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항소를 하였고, 원고 역시 자신이 철회법령에 따른 철회를 위한 적절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손해에 한정하여 소송을 진행함은 잘못이며, 판결 전 이자(prejudgment interest)를 지급 받을 권한이 있다고 다투면서 역시 항소를 하였다.

### 판결요지

1. 명예훼손된 원고의 변호인이 텔레비전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 방송국 또는 방송국측 변호인이 자신과 연락을 취하여 철회의 방법을 상의하자는 것과 이러한 철회보도가 자신과 먼저 상의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비록 방송국이 철회를 보도할 의향을 즉각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그 자체에 제시되지 아니한 조건부 요구(conditional request)를 구성하므로 캘리포니아 철회법령인 민법 제 40 조 a 항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2. 위 철회법령상 원고의 사업상의 수입이 다른 사람들이 원고의 처해있는 상태를 알게 됨으로써 감소된 경우 원고는 정신적 손해(psychic injury) 또는 감정적 고통(emotional distress)에 관한 증거를 특별손해의 청구원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명예훼손된 원고의 일실수익이 재산상 손해(property damages)라기 보다는 개인적 손해(personal damages)를 의미하므로 판결전 이자를 선고받을 권한이 있다.

### 판결이유

Todd 판사는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의견을 개진한다.

항소의 주요쟁점은 부분적으로 아래와 같은 위 제 48 조 a 항에 관한 문제이다. 위 제 48 조 a 항의 조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1. 신문의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libel) 또는라디오 방송으로 인한 구두의 명예훼손(slander)의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는 정정보도를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정정보도가 게재 또는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특별손해에 대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고는 보도당사자에게 발간 또는 방송된 장소에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내용을 특정하고 그 정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 및 요구는 명예훼손 내용의 발간 또는 방송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2. 만약 정정이 위 기간 내에 요구되고, 해당신문 또는 방송국에서 이러한 송달 후 3 주내 통상발간 또는 방송되는 매체에서 명예훼손으로 주장된 기사와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명백한 방법(substantially conspicuous manner)으로 행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러한 통지, 요구 및 정정불이행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고 나아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유지된다면 원고는 통상손해, 특별손해 및 징벌적 손해(exemplary damages)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징벌적 손해는 피고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발간 또는 방송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주장, 입증하고 법원 또는 배심원이 재량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현실적 악의는 발간 또는 방송으로부터 추론되거나 추정되지 아니한다.

(중략)

4. <통상손해>, <특별손해>, <징벌적 손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통상손해>는 평판의 손상, 수치 또는 치욕과 감정의 손상에 대한 손해이다.

(b) <특별손해>는 원고가 주장된 명예훼손 만에 의한 결과로서 지출하였다고 주장, 입증하는 금전적 손해를 포함하여 원고가 자신의 재산, 사업, 거래, 직업 등에 관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입증된 모든 손해이다.」

위 제 48 조 a 항의 합헌성은 연방대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철회가 요구되지도 아니하고 거절되지도 아니한 경우 일반적 손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의 위험성 및 뉴스 보도의 자유로운 전파를 위한 일반 공공의 이익은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구제가능한 손해를 특별손해로 제한해야 한다고 인정함으로써 확인된 것이다.

I. 먼저 원심이 O'Hara 가 위 제 48 조 a 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한 판단과 Storer 가 정정보도를 방송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이 잘못이라는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1983. 11. 2. O'Hara 의 변호인은 철회의 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채널 39 방송국에 직접 또는 방송국측 변호인이 자신과 접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O'Hara 변호인의 편지는 철회를 희망한다는 언급이 있으나, 철회가 「단지(Only) 먼저 본인과 논의를 한 후에」 보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편지는 O'Hara 가 충족하여야 할 조건을 지배하는(controlling the conditions) 조건부 요구(conditional requests)이며, 채널 39 방송사는 철회보도를 방송하고, O'Hara 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즉각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O'Hara 또는 동녀의 변호인이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채널 39 방송사가 철회를 위한 조건적 요구를 응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적 요구는 위 제 48 조 a 항에 따른 요구가 되지 아니 한다.

II. O'Hara 가 위 제 48 조 a 항에 따른 철회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특별손해를 증명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O'Hara 는 생계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달리 설명되지 아니하는 영업상의 고객의 손실을 겪었고, 고용주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관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명예훼손은 고용주로 하여금 자신을 고용하지 않을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동녀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정신적 침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명예훼손 이후의 영업상 고객의 손실은 회복가능한 특별손해(recoverable special damages)이다. O'Hara 는 명예훼손의 방송 이전에 상당한 활동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전혀 아무런 사업계획도 수립할 수 없었음을 나타내는 1982 년과 1983 년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위 명예훼손의 방송 이후 사업에 관한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을 증언함으로써 이러한 손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문제는 이러한 증거가 과연 특별손해를 구성하는 자료가 되느냐이다. 특별손해와 일반손해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는데, 통상손해는 피고가 행한 실제적 불법행위의 유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야기되는 손해인 데 반하여, 특별손해는 원고가 특정한 액수의 손해를 실제로 입었다는 특정원고에 대한 다소 특이한(more or less peculiar) 손실의 항목을 포함한다. 이러한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는 2 가지의 제한이 적용된다. 1) 특별손해는 합리적인 확실성(resonable certainty)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며, 2) 인과관계에 있어

원인으로 간주되는(deemed remote)경우에는 특별한 손해는 회복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는 아직 분명히 판결된 바 없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즉 피해자의 사업상의 수입이 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 된 원고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게 됨으로써 감소된 경우 특별한 손해의 청구원인으로서 정신적 침해 또는 감정적 손상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느냐이다. 당원은 허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상실된 일할 수 있는 시간의 가치, 명예훼손으로 인한 치료비 및 고용에 있어서의 경제적 상실은 묵시적으로 특별손해로 고려된다. Storer 는 명예훼손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특별손해의 근거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나 인정할 수 없다. 위 제 48 조 a 항은 명시적으로 명백한 감정상의 불안정(emotional instability)에 의한 고용의 상실은 분명히 「재산, 사업, 거래, 직업」에 대한 손실을 결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Hara 의 경우 상당한 증거가 동녀의 명예훼손이 직접적인 또는 근인적인 결과(a direct and proximate result)로서 일할 능력의 상실을 통한 금전적 손해(monetary damages)를 입었다는 배심원의 평결을 뒷받침하고 있다. Storer 는 전통적인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는 평판에 대한 손해로부터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손해의 구제도 배제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48 조 a 항의 성질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정당하게 철회를 요구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 손해를 배제하는 철회보도 조항이며, 철회보도의 목적은 명예훼손된 자의 평판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므로 평판의 손실에 대한 손해인 통상손해의 필요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O'Hara 는 이러한 법령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동녀의 평판의 손해에 대하여 침해의 구제는 배제하나, 「사업, 직업상」 특별히 증명된 손해의 구제를 특별하게 허용한다.

III. Storer 는 300,000 달러의 평결이 과도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유없다.

IV. O'Hara 는 원심이 판결전 이자를 허용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3291 조는 타인으로 결과 또는 야기된 개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판결전의 이자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Storer 는 O'Hara 에 대한 평결이 개인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산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전 이자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제 48 조 a 항이 존재한다고 하여 개인적 손해로부터 재산적 손해로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으며, 단지 원고가 철회를 정당하게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제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the limit on the types of damages)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판결전에 이자의 선고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V.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판결전 이자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판결전 이자를 포함하여 판결을 변경할 수 있도록 원심으로 환송한다(remanded).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affirmed).

## Amos 판사의 반대의견

다수의견 중 특별손해에 대한 논리전개 및 결론에 대하여 반대한다. 특별손해에 대한 주요쟁점은 민법 제 48 조 a 항 (4)(b)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별손해에 O'Hara 가 명예훼손으로 야기된 질병, 우울, 정신적 고통 등의 결과로 일할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감소된 수입을 포함하느냐인데, 다수의견은 이를 긍정하나, 본인은 이에 반대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특별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특별손해가 정신적 피해에서가 아니라 평판의 손실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와 상반되며, 따라서 전통적 입장과 일치하기 위하여 민법 제 48 조 a 항 (4)(b)의 규정은 수입의 상실에 대한 특별손해로서 제 3 자가 명예훼손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행해진 제 3 자의 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인은 만약 O'Hara 가 명예훼손적 내용의 보도로 결과된 영업의 감퇴를 입증하였다면 이것이 특별손해를 구성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나, 원심이 동녀가 정신적 고통으로 야기된 일할 능력의 상실로부터 결과된 특별손해를 증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